

예 산 총 칙

2018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40,670,575	16,220,117
일반회계	457,350,287	13,720,509
특별회계	83,320,288	2,499,609
공기업특별회계	32,512,673	975,380
상·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	32,512,673	975,380
기타특별회계	50,807,615	1,524,228
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	26,512,373	795,371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14,506,572	435,197
농공지구조성사업	2,630,639	78,919
의료급여기금운영	1,576,981	47,309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	1,091,983	32,759
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	4,489,067	134,672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 명세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2,415,105천원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6,246,326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6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복구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